

통일공대 학생회칙

2022. 10. 06. 개정

- 통일공대 학생회칙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및 창의ICT공과대학 및 소프트웨어대학 학생회(이하 통일공대 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사회개혁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학생회원간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며 대학의 진보 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회는 통일공대 소속 각 학부 및 학과 학생회로 구성된다.

제4조(기구)

본회는 학생총회, 단과대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동아리 연합 회의를 둔다.

제5조(권한)

1항 본회는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2항 본회는 회원들의 합의와 동의하에 사업을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제2장 회원

제6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의 학사 과정 재적생으로 한다. 단, 휴학생은 휴학 기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제7조(권리)

- 1항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2항 본회의 회원은 제반 활동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3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8조(의무)

- 1항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2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제3장 학생총회

제9조(지위)

학생총회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0조(구성)

- 1항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 2항 학생총회 의장은 본회의 학생회장으로 한다.

제11조(소집)

- 1항 학생총회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2항 본회의 회원 1/10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 학생회장은 즉시 학생총회 소집 공고를 내어야 한다.
- 3항 소집을 할 때는 소집이유를 명시하여 3일 전에 공고한다. (단 전항의 단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의결)

- 1항 학생총회는 재적 인원 1/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항 총회를 열 수 없을 경우에는 총 투표로 대신한다.

제13조(권한)

- 1항 학생총회는 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 2항 학생총회는 정(부)학생회장 또는 집행위원회 국장 (이하 집행국장)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항 정(부)학생회장의 탄핵심판을 위해 개의회는 학생총회는 단과대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진행 아래,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회고 참석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단과대학생대표자회의

제14조(지위)

단과대학생대표자회의(이하 단학대회)는 학생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5조(구성)

1항 단학대회는 회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통일공대 정(부)학생회장, 각 학부 및 학과 정(부)학생회장, 학년 대표, 반 대표, 통일공대 동아리 대표자로 한다.

2항 단학대회의 의장은 본회의 학생회장으로 한다.

3항 정(부)학생회장의 탄핵 소추를 위해 개의회하는 경우, 단학대회의 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임시의장으로 한다.

제16조(소집)

1항 정기 단학대회는 매 학기 1회 이상 의장이 소집한다.

2항 임시 단학대회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3항 단학대회는 재적 대표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즉시 소집공고를 내어야 한다.

4항 소집은 7일 전에 공고한다. 단, 임시 단학대회는 즉시 소집공고를 내어야 한다.

5항 제출된 안건과 그에 관한 설명, 집행국의 보고, 인준사항 등이 포함된 내용의 자료집을 회원을 대상으로 대회 당일 배포하며, 대회 3일 이전에 전산화된 형태의 문서로 제작하여 온라인에 게시한다.

제17조(의결)

일반안건에 대하여 재적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업무 및 권한)

단학대회는 학생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본회의 제반 중요 사업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학생대표자회의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항 학생총회 소집요구권

- 2항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 3항 학생회 예산 심의 및 결산 감사권
- 4항 학생회칙 개정 발의 및 의결권
- 5항 학교 당국과 통일공대 학생회 전반에 관한 제정 및 의결권
- 6항 본회 정(부)학생회장의 탄핵소추권
- 7항 집행위원회 국장의 소환권
- 8항 집행위원회 국장의 탄핵소추, 심판권
- 9항 기타 단학대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제18조의 2(안건상정)

- 1항 의장 또는 운영위원회는 3일 전까지 안건을 상정한다.
- 2항 재적 대표자 1/5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3항 회원 30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19조(탄핵소추권)

- 1항 단학대회는 재적 대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정(부)학생회장을 탄핵소추할 수 있다.
- 2항 단학대회는 재적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회의 각 집행국장을 탄핵소추할 수 있다.

제20조(대회 회의록)

- 1항 단학대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 2항 회의록은 대회의 진행 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한다.

제21조(위임)

- 1항 단학대회에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은 위임장을 작성함으로써 타인에게 참석 및 발언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2항 피위임자의 자격은 해당 학과 및 학부, 학년이 같아야 하며 재학생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 3항 위임자는 단학대회 개회 예정시간 3시간 전까지 상급단위 대표자의 확인을 필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2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단학대회로부터 위임받은 상설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23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정(부)학생회장과 각 학부 및 학과 정(부)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학부 및 학과 회장단 직위 공식 시 권한대행인으로 구성한다.)

제24조(소집)

- 1항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주 한 번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2항 임시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제25조(의결)

운영위원회는 구성단위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본회의 제반 중요 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상설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 1항 학생총회의 소집요구권
- 2항 단학대회의 소집요구권
- 3항 각 집행국장의 인준권, 탄핵소추권 및 출석 요구권
- 4항 각 집행국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 5항 특별기구 구성권
- 6항 학생회 예산 편성 및 결산 동의권
- 7항 학생회칙 개정 발의권
- 8항 학교 당국에 대한 발의권
- 9항 학교 당국에 대한 교섭권

제27조 (탄핵소추권) 운영위원회는 구성단위 과반수 출석과 출석단위 2/3 이상의 찬성으로 각 집행국장을 탄핵소추할 수 있다.

제6장 정(부)학생회장

제28조(지위)

정(부)학생회장은 학생총회, 단학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9조(선출)

1항 정(부)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이며, 본회의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로서 전체 회원의 과반수의 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단, 단독 후보일 경우 과반

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항 정(부)학생회장이 동시에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대행을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항 정(부)학생회장의 유고 및 사퇴 시 잔여임기가 100일 이상인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임기)

1항 정(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 학년도 12월 1일부터 다음 학년도 11월 말까지 보장된다. (단, 재선거나 보궐선거에 의한 당선인은 당선 직후부터 임기를 보장한다.)

2항 다음 해 선거가 성사되지 못할 시 이전 운영위원회 의장은 다음 해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1조(신분보장)

정(부)학생회장의 임기는 사퇴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일체의 신분이 보장된다.

제32조(업무 및 권한)

1항 정(부)학생회장은 본회의 사업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진다.

2항 정(부)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된다.

3항 학생회장은 본회의 학생총회, 단학대회, ~~총~~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4항 정(부)학생회장은 각 집행위원회 국장과 집행국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지닌다.

5항 정(부)학생회장은 집행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6항 정(부)학생회장은 본회 및 회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 당국 및 중앙운영위원회에 본회를 대표하여 청원할 수 있다.

7항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의 유고 및 궐위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8항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33조(전체 투표에 대한 삭제 조항)

제7장 집행위원회

제34조(지위)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에 입각하여 학생회 사업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상설 집행 단위이자 정책 단위이다.

제35조(구성)

- 1항 집행위원회의 구성은 당해 학생회장이 임명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2항 각 집행국장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집행국원을 둘 수 있다.

제36조(선출)

- 1항 집행국장은 운영위원회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동의를 받은 자 가운데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 2항 집행국원은 각 집행국장의 추천을 받아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제37조(특별부서)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집행국 이외의 집행 부서를 둘 수 있다.

제8장 학과 및 학부 학생회

제38조(구성 및 운영)

학부 및 학과 학생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학부 및 학과별 학생회칙에 따른다.

제38조의 2(학과 및 학부 정(부)학생회장)

- 1항 학과 및 학부 정(부)학생회장은 해당 학과 및 학부를 대표하여 본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 2항 학과 및 학부 정(부)학생회장의 선출은 해당 학과 및 학부의 학생회칙과 선거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9장 선거

제39조(선거)

본회는 정(부)학생회장 선출을 위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의한 선거를 실시한다.

제40조(시기)

매 학년도 정(부)학생회장 선거는 직전 학년도 11월 중에 실시한다.

제41조(유권자)

본회에서 실시하는 선거 유권자는 본회의 회원으로 한다. 단, 휴학생은 제6조에 따라 유권자에서 제외한다.

제42조(선거관리위원회)

1항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2항 선관위는 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하며, 학생회장이 선관위원장, 부학생회장이 부선관위원장이 된다.

3항 선관위는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정(부)학생회장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4항 선관위는 선관위가 구성된 후부터 정(부)학생회장 당선 확정 공고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대신한다.

5항 선거 기간 동안 집행위원회가 특수한 사업 진행, 의견 표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집행위원회의 특정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선관위는 해당 행위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43조(선거공고)

선관위는 선거일 15일 이전에 미리 선거공고를 한다.

제44조(후보자등록)

후보자는 본회의 4차 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후보등록 마감 직전까지 회원 3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된 자로 한다. (단, 비대면 선거 시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제45조(당선의 기준)

1항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항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의 득표 차이는 전체투표의 무효표 수와 기권표 수의 합을 초과하여야 한다.

3항 단독 후보일 경우 50% 이상의 투표율에 50% 이상의 찬성표로 당선이 되며, 이때, 찬성표 수와 반대표 수 차이가 전체 투표수의 무효표 수와 기권표 수의 합을 초과하여야 한다.

제46조(재투표 및 재선거)

1항 투표율이 유권자의 50% 이하일 경우에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투표 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항 투표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유권자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3항 개표 후 선본에서 이의제기를 하여 선관위의 논의를 통해 이의가 수용된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46조의 2(보궐선거)

1항 정(부)학생회장단이 탄핵, 유고 등의 이유로 궐위된 때 잔여 임기가 100일 이상 일 경우 15일 이내 운영위원회는 보궐선거의 시행 일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2항 운영위원회가 보궐선거 시행 일정을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시행해야 한다.

제47조(권한대행)

1항 학생회장 궐위 시 잔임 기간 동안 권한대행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중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을 통하여 선출한다.

2항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학생회장 권한대행의 임기는 전임 학생회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8조(선거시행세칙)

선거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통일공대 선거시행세칙 및 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따른다.

제10장 재정

제4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및 기타 수익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제5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학생회장의 임기로 한다.

제51조(예산편성)

1항 본회의 예산은 사무국의 제안으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고 단학대회의 심의를 받는다.

2항 예산안이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전체 예산안의 10%의 범위에서 경상비를 제출한다.

제52조(결산보고)

1항 본회의 결산은 사무국에서 담당하며 단학대회의 감사를 받는다.

2항 매월 말에 사무국의 제안으로 학생회장은 결산보고서를 공고한다.

3항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사무국은 재정 상태를 공개해야 한다.

제53조(회비)

본회의 회비 사용에 관한 회계 업무는 통일공대 학생회장의 결재에 의하여 행하며, 그 인출 및 집행은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제11장 학생회칙 개정

제54조(제안)

1항 학생회칙 개정안은 학생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단학대회에서 제안한다.

2항 학생회칙의 개정안은 회원 1/10 이상의 연서로 단학대회에서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공고)

학생회장은 회칙 개정안을 단학대회 소집공고와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의결)

1항 학생회칙 개정안은 단학대회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2항 학생회칙을 전면 개정할 때에는 단학대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57조(공포)

개정안이 확정되면 학생회장은 이를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장 비상대책위원회

제58조(정의)

비상대책위원회는 통일공대 선거시행세칙에 마련된 매년 정기적인 선거기간에 선거가 무산되어 학생회장단이 선출되지 않았을 때 운영위원회에 준하여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59조(구성)

구성원은 본회 회칙 제58조(정의)에 의해 구성되며 통일공대 정(부)학생회장은 제외한다.

제60조(업무 및 권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 회칙 제26조(업무 및 권한)에 언급된 운영위원회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며 권한을 갖는다.

제61조(소집과 의결)

본회 회칙 제24조(소집)와 제25조(의결)와 같은 소집과 의결 절차를 거친다.

제13장 비상대책위원장

제62조(정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들의 투표로 뽑힌 위원회의 대표이다.

제63조(업무 및 권한)

제32조(업무 및 권한)에서 규정한 정(부)학생회장과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임무와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 할 수 없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임무와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제64조(선출)

1항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후 비상대책위원들 중 한 명으로 구성된다.

2항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재적인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2인 이상의 후보가 나온 경우 과반 득표자가 선출된다.(단, 최다 득표수가 과반이 되지 못할 경우 최저 득표자를 제외하고 재투표를 실시하고,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 까지 재투표 한다.)

제14장 총 투표

제65조(정의)

총 투표라 함은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의사를 투표로 묻는 방식이다.

제66조(권한 및 목적)

1항 본회 회원의 의견을 반영되게 하며 실현화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항 총 투표의 권한은 회원의 모든 의사를 묻고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 방식이다. 앞에 정해진 모든 의결 방식이나 단체보다 우선시 된다.

제67조(진행 방식)

세부적인 투표의 진행방식은 통일공대 선거시행세칙과 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따른다.

부 칙

제1조(공포)

본 회칙은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소속)

학과 및 학부의 소속 캠퍼스와 관계없이 공과대학, 창의ICT공과대학, 소프트웨어대학 소속 학과 및 학부는 본회의 구성원으로 하며, 자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3조(회칙 해석)

통일공대 학생회칙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4조(회칙 준수)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으나 회칙 준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회칙을 따르는 것이 본회 및 회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한 사안에 한해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며 의결사항은 즉시 공고한다.

- 통일공대 동아리 회칙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공과대학 및 창의ICT공과대학 및 소프트웨어대학(이하 통일공대)에 소속된 동아리는 ‘통일공대 동아리’ 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1항 통일공대 동아리의 목적은 공학인이 관심가질 수 있는 활동을 같이 함으로써 공학인 상호간의 발전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항 본회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과 창조적 대학 문화를 고양하고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등록

제3조(재등록 및 신규 등록 요건)

1항 동아리 회칙 1부(단, 동아리 전 회원의 의사로 회칙이 불필요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유서와 동아리 활동 강령 1부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

2항 20인 이상의 서명이 완료된 동아리 전체 회원명부 1부(단, 동아리 회원은 3개 학과 및 학부 이상에서 학과 및 학부당 5명 이상의 학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하나의 학과 및 학부 인원이 동아리 전체 인원의 70%를 넘긴 명부는 효력이 없는 명부로 취급한다.)

3항 전 학기 동아리 활동 내용, 동아리 등록 목적, 동아리 소개서 및 동아리 활동계획서 각 1부.(단, 전 학기 동아리 활동내용은 재등록 동아리에 한한다.)

4항 회원 명부와 활동계획서 등에서 거짓이 확인될 경우 제8조와 같이 징계한다.

제4조(신규 동아리 등록 자격)

신규 동아리 등록 대상은 제5조에 의하여 가등록된 동아리 중 한 학기 이상의 활동을 지속한 동아리로 한다.

제5조(의결과 완료)

1항 등록은 매 학기 초에 하며, 각 동아리는 등록 기간에 제3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통일공대 학생회에 등록한다.

2항 등록 마감과 함께 학생회장은 즉시 이를 공고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각 동아리가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 가진 후 의결한다.

3항 운영위원회에서 등록이 확정된 동아리는 본회 회장이 이를 3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공포와 함께 등록이 완료된다.

4항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 회원들이 동아리 등록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동아리의 등록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제6조(등록 기간)

1항 공고는 1학기 등록은 3월, 2학기 등록은 9월까지 하며 등록공고 시점으로부터 최소 일주일을 보장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재등록과 신규 등록 및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2항 동아리의 활동 기간은 등록일부터 다음 학기 등록 완료일로 하며, 동아리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면 동아리 등록기간에 제3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가등록)

1항 가등록 동아리(이하 가동아리)는 제3조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갖추고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승인된다.

2항 가동아리는 자치공간을 지원 받을 수 없다. (단, 제9조 3항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가동아리에게 자치공간을 배정할 수 있다.)

3항 가동아리 인준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4항 1학기 이상 활동한 가동아리는 정등록 동아리(이하 정동아리) 승격이 가능하다. 정동아리 승격은 제3조의 신규 등록 요건을 충족한 동아리에 한해 재등록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제8조(등록 요건의 정계)

동아리 등록 요건 시 동아리 회원 중 유령회원이 적발된 경우 당일 등록심사에서 강등되며, 다음 학기 등록이 불가하다.

(단, 정동아리에서 가동아리로 강등되는 경우 다음 학기 가동아리 유지심사에 재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운영

제9조(동아리 자치공간 배정)

1항 동아리 자치공간은 정동아리의 자치공간이며, 이 공간의 운영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침해받지 아니한다. 단, 동아리 자치공간을 타 동아리와 바꾸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한다.

2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

- 1) 인륜을 해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 2) 화재 문제, 성 문제, 폭행 문제 등 통일공대의 위상에 위해가 되는 경우
 - 3)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가 초래되는 경우
 - 4) 정(부)학생회장 또는 2/3 이상의 운영위원회의 발의 또는 2/3 이상의 동아리 연합 회의의 발의가 있을 경우
- 3항 집행위원회가 동아리 자치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당 자치공간 배정 여부를 결정한다.
- 4항 배정방법
동아리 연합 회의에서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단, 결정하지 못할 경우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5항 자치공간 반납
재등록이 거부된 동아리는 공고 후 10일 안에 동아리 자치공간을 정리해야 한다. 유예기간 후에 자치공간 안의 물건은 포기의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집행위원회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며 동아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동아리 연합 회의)

1항 구성

동아리 연합 회의는 각 동아리 대표자와 통일공대 문화체육국장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통일공대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단, 문화체육국장의 부재 시 정(부)학생회장이 대신한다.)

2항 업무 및 권한

- 1) 동아리 제반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한다.
- 2) 본 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 3) 문화체육국장의 주관하에 월 2회 회의를 정례화한다.

3항 운영 및 소집

- 1) 회의는 정(부)학생회장, 문화체육국장의 요구 및 동아리 대표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될 수 있다.(단, 각 동아리 대표가 인정한 대리인의 참여도 가능하다.)
- 2) 임시 회의는 3일 전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4항 의결

재적인원의 2/3인 이상의 참석과 참석 인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11조(동아리 징계의 사유 및 조치)

1항 징계에 해당되는 사항

- 1) 동아리 연합 회의에 2회 연속 불참한 경우, 단 임원진 신분의 대리인 출석 인정
- 2) 제2조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 3) 집행위원회 및 과학생회, 타 동아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을 행한 경우
- 4) 학기에 1회 이상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5) 정기적인 모임을 하지 않는 경우

2항 징계에 준하는 사항

1) 동아리 목적에 준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학기에 1회 이상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3) 정기적인 모임을 하지 않는 경우

3항 징계 절차

1) 제11조 1항, 제11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동아리 연합 회의에서 동아리 대표자들의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회에 의장이 보고한다.(보고여부는 제10조 4항에 의거, 의결로 결정)

2) 제11조 3항 1) 이외의 사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징계로 판정되는 경우 주의 및 경고 사항을 결정한다.

4항 징계 효력

1)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준한다.

2) 경고 2회는 제명안건에 회부되며 자치공간을 폐쇄한다.

5항 징계의 발효

1) 확정된 징계는 정(부)학생회장이 이를 3일 이내로 공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를 받은 동아리는 공표 후 5일 이내로 운영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다음 날부터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동아리 활동보고)

1항 가동아리를 제외한 동아리는 매학기 동아리 인준심사 회의 때 전학기 활동보고를 해야 한다.

2항 활동보고는 전 학기 활동내역 다음 학기 활동 계획 등을 포함한다. 위의 경우 회원 누구나 집행위원회에 동아리에 대하여 건의 할 수 있으며 이때 운영위원회는 이에 대해 심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3항 동아리는 자신들의 활동을 공학인 전체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제4장 관리

제13조(관리)

동아리의 관리는 집행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관리가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한다.